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 6. 23.(목)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나. 제출일자 : 2011년 6월 3일
- 다. 회부일자 : 2011년 6월 8일
- 라. 상정일자 : 2011년 6월 16일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윤영현)

가. 제안이유

「공무원 여비규정」의 국외숙박비 등 관련조항이 일부개정(2011. 2. 9)되어 국외숙박비 지급·정산에 실비정산제 준용 근거를 마련하여 여비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국외숙박비 정액지급에서 실비정산제 준용 근거마련(안 제5조 제1호)
 - 현 정액지급 ⇒ 신용카드 사용 후 상한액 범위내에서 정산
- ※ 단, 카드사용이 어려운 국가는 현금을 선 지급 후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비정산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손자용)

이번에 개정하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공무원 여비 중 국외숙박비 정액지급에서 실비정산제로 변경하기 위한 근거마련.
 - 현 정액지급 ⇒ 신용카드 사용 후 상한액 범위내에서 정산

금번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국외숙박비 등 관련조항이 일부개정(2011. 2. 9) 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8조의 2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도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 7. (생략)</p>	<p>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현행과 같음)</p> <p>1. 제8조의 2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u>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u> 2. ~ 7. (현행과 같음)</p>

관 련 법 규 발 체

□ 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 2011.2.9 대통령령 제22661호]

제8조의2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국외 여행의 운임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숙박비를 결제 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의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 카드"라 한다) 또는 「여신전무금융업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국 외여행자만 해당하며, 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2.9>

② 국내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국외여행자는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 를 갖추어 회계 관계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개정2011.2.9>

③ 제2항의 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공무원은 여비의 정산업무를 효율적 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 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 지 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 13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국내 여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